

#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통역지원사업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는 부산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장, 공동체를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환경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일터 내 노동·산업안전보건 교육 또는 업무전달사항을 위한 사업장 현장통역 신청에 대해 우선 지원하며,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권리구제가 필요한 이주노동자에게 통역 지원을 합니다. 이에 통역지원이 필요한 사업장 또는 공동체 등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 사업개요

- 사업명 :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통역지원
- 사업기간 : 2025. 03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소진 시 마감)
- 사업목적 : 현장으로 찾아가는 노동안전보건 통역을 지원하여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부산소재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부산 소재 이주민공동체 등
- 지원구분 : 노동·산업안전보건 교육 혹은 노동법률 자문, 안전보건 관련 업무전달 통역지원 (1회 최대 2시간, 사업장 당 최대 3회)
- 지원언어 : 17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타갈로그)어, 네팔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몽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키르기스어, 카자흐스탄어)

※ 본 사업은 ‘통역사’만 지원하므로 교육 통역 시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는 신청사업장에서 자체 섭외해야 합니다.

- 지원조건 : 통역지원 대상자 5인 이상
- 통역일정은 통역사 섭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후 조율.

## 3

### 지원내용

-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관련 업무 전달사항 등 통역지원
- 부산광역시 소재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
- 일터 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 내원, 권리구제 등을 위한 공공기관 출석 시 통역지원
- 부산노동권익센터 전문교육을 이수한 통역사 파견

## 4

### 신청자격 및 주의사항

| 구분        | 자격요건  |
|-----------|---|
| 부산시<br>소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 : 부산소재 사업장 또는 실근무현장이 부산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제출)</li> <li>○ 공동체 : 공동체 활동 소재지가 부산</li> <li>○ 노동자 : 출생국가가 한국이 아닌 자로 노동이주를 한 노동자</li> </ul> |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결과는 개별통보)

## 5

### 신청접수 및 추진과정

| 추진 단계       | 주요 내용                      |
|-------------|----------------------------|
| 모집 공고       | • 신청기업 등 모집 및 신청서 접수       |
| ↓           |                            |
| 신청서 검토      | • 신청서류 사전확인 및 통역사 섭외, 일정협의 |
| ↓           |                            |
| 사업 진행       | • 찾아가는 현장 통역               |
| ↓           |                            |
| 사업종료 및 사후관리 | • 통역확인/만족도조사               |

※ 제출서류

| NO. | 신청 시 제출서류                             | 비고  |
|-----|---------------------------------------|-----|
| 사업장 | 통역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신청자 |
| 공동체 | 통역사업신청서, 공동체 소개 및 통역 받고자 하는 내용        |     |

## 6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방법 : 부산노동권익센터 방문, 메일, 팩스
  - 방 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99, 3층
  - 메 일 : jal@bslabors.or.kr / 팩 스 : 051-852-1900
- 문 의 처 : 부산노동권익센터 담당자 장아름 070-4409-6115(직통)



##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노동안전보건 통역지원사업 신청에 앞서 신청기업 정보, 신청 대상 노동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업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고유식별정보]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유·이용기간                            |
|---|---|--|------------------------------------|
| - 기업정보<br>(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기업정보 등)<br>-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가능 | - 참여 적격요건 확인<br>- 사업성과 활용 및 평가 관리<br>-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 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활용 등<br>- 기타 사업진행 상 활용 및 중복, 부정수급확인을 위한 수집·이용 | - 부산노동권익센터<br>- 이주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통역지원사업 참여기관<br>- 기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 신청시점 이<br>나 지원종료<br>시점으로부터<br>만 3년 |

2. 부산노동권익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이주노동자(외국인근로자) 노동안전보건 통역지원사업 참여 사업주와 대상 노동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소득세법 제 145조 및 164조, 동법 시행령 제 193조 및 제213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